

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① 본 규정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와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사항에 대해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, 원격수업 콘텐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2조(조직) ①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교학지원처장, 기획조정처장, 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09.10.>

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,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09.10.>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대학 원격수업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및 의결
2. 원격수업 제도 개선에 관한 심의 및 의결
3.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
4.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심의
5. 기타 원격수업 관한 정책 자문
6. 콘텐츠 질 관리에 관한 심의 및 의결

제5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참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격수업에 관한 결정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직원 중 1인으로 한다.

제9조(재정)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, 조사비, 여비,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 2019. 1. 28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1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